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"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관"을 삭제하고,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, "지방행정 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제15조중 "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"를 "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등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②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

제10조제6호와 제11조중 "자문위원회"를 "자문협의회"로 한다.

③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